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7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서지영·서천호·김선교

이헌승 · 성일종 · 김소희

김대식 • 이인선 • 조정훈

최은석 · 김승수 · 곽규택

송언석 의원(13인)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2025년에는 53개대학이 1,684억 5,000만원에 이르는 운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

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수 있음(안 제6조).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교육부장관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 3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자.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8조).
-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 2. "사립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말한다.
- 3. "경영위기대학"이란 사립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교 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 러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

관이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 4. "사업양도"란 사립대학의 시설, 교육과정, 교직원 및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학교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병, 사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대학에 흡수시키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에 대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재정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5. 제16조에 따른 폐교·해산에 관한 사항
 - 6. 제17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7. 제18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학교법인 임원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 분야의 행정 또는 연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6.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 무원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상당하는

고등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 2.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지원
 - 3. 제10조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의 지원
 - 4. 제12조에 따른 경영자문의 제공 및 지원
 - 5. 제18조에 따른 학생의 편입학 및 연구자・교직원 보호 지원

- 6. 제20조에 따른 청산의 지원
- 7. 그 밖에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 1.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교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
 - 2. 그 밖에 재정진단 결과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대학에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교육부장관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이의가 있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 당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통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위험 원인과 그 수준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 2. 학부·학과의 통·폐합
 - 3. 사립대학의 통 폐합
 -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의 변경을 승

인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법 인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학생 모집의 정지
- 2. 사립대학의 폐교
-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제출·변경, 제4항에 따른 구조 개선 명령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및 보고) ①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학교법인에 이행실적 중간점검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개선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정상태의 개선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법인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 받은 학교법인은 제12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2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

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이행계획 수행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 의 이사회는 구조개선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및 사 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직전 정식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이행

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6조(폐교·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이행계획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교육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폐교 또는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구조개선 명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쇄될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
 - ② 학교법인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해당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폐교 또는 해산할 수 있다.
 - 1.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
 - 2. 폐교에 대한 구성원(재학생 포함) 과반수의 동의
 - 3. 경영악화로 인하여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곤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대책
-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 4. 경영위기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학교법인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의한 감사 결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인가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경영위기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범위 및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 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

-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에 대한 출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 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
- 4. 제16조에 따른 해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교직원 2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의 귀속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장려금의 범위, 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① 국가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6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면직된 연구자가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 학술·연구개발 활동 참여에 있어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④ 학교법인은 제16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폐교대학 소속 재학생이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 중단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6조에 따라 폐교 또는 학교법인이 해산된 사립대학에 대한 학적부·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물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 제19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행계획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20조(해산·청산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 인가의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 등기일(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 관이 지정한 해산일을 의미한다)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산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